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채우진 의원)

의 안 번 호	24-144

발의년월일 : 2024. 11. .

발의자 : 채우진, 강동오, 권인순, 이상원, 차해영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현재 동 조례에 따라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고 있음. 하지만, 일반 쓰레기를 해당 시설이나 용기에 버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및 수거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형광등·폐건전지를 포함한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 및 “재활용가능자원”의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 및 정비하도록 규정함.

(안 제9조의2 신설)

3. 관계법령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11. 6. ~ 11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관리대장의 작성)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·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9조의2(관리대장의 작성)**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·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(약칭: 자원재활용법)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3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**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**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**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** <개정 2014. 1. 21.> [전문개정 2008. 3. 21.]

「폐기물관리법」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66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,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·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 [본조신설 2017. 11. 28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(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제12조제2항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이창헌
연 락 처	02-3153-9216